

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·학술상 운영 규정

제정 1998. 4. 3.

개정 2000. 8. 1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고취하고 농업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한 교육·학술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의 종류와 명칭) 교육·학술상은 “教育賞”과 “學術賞”의 2종류로 한다.

제3조(수상자) 교육·학술상의 수상자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중에서 각 부문 매년 1명씩 선정하며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4조(시상시기) 시상의 시기는 매년 10월경으로 한다.

제5조(수상자의 자격) ① “교육상”은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교육에 헌신한 교수 또는 학생교육의 師表가 되는 교수에게 수여한다.

② “학술상”은 연구논문 및 저술 업적이 탁월한 교수에게 수여한다.

제6조(수상후보자의 추천) 수상후보자의 추천자는 아래와 같다.

1. “교육상” 수상후보자 : 학부(과)장, 3인 이상의 교수 또는 학부(과) 학생회장
2. “학술상” 수상후보자 : 학부(과)장, 3인 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소장

제7조(추천 구비서류) 제6조의 추천자는 당해 연도 심사 1개월 전까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8조에 규정된 “심사위원회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추천서
2. 피추천자의 업적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

제8조(심사위원회) ①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교육·학술상 심사위원회(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사위원회는 학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시상일까지로 한다.

제9조(시상) 시상은 상패와 상금으로 하며, 학장이 수여한다.

제10조(세칙)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(제17호, 1998.4.3.)

이 규정은 199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24호, 2000.8.18.)

이 규정은 200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